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70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민홍철 · 송재봉
양부남 · 민병덕 · 김현정
허성무 · 주철현 · 정진욱
조계원 · 이광희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.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(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)으로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·문화시설·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·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정책 사업임.

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토지 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,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

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97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에 (99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99) 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